

- 2026년 울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- 「가상융합산업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」 사업 공고문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울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「2026년 가상융합산업 과제 발굴 및 제작 지원」 사업 과제 수행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00일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

모집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가상융합산업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사업
- 사업기간
 - 공고기간 : '26. 4. 1.(수) ~ 4. 20.(월)
 - 접수기간 : '26. 4. 1.(수) ~ 4. 20.(월) 18:00까지
 - 사업운영 : 협약일 ~ 6개월
- 공모방식 : 자유공모(4건)
- 공모대상 : 울산소재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관련 기업
- 공모내용 :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제작 개발비 및 사업화 지원
- 공모규모 : 4개사, 총 270백만원 ※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
구분	지원분야	지원규모
울산 특화산업 연계 가상융합콘텐츠 개발 및 실증	울산 특화산업 분야 (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, 비철금속 등)	120백만원 x 1개사
실가상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	울산소재 자유분야 (산업, 홍보, 관광, 직무 등) ※ 게임, 웹툰,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양	70백만원 x 1개사
가상융합기반 콘텐츠 고도화 지원	울산소재 자유분야 (산업, 관광, 문화, 엔터 등)	40백만원 x 2개사

1

신청자격

- 본사 및 지사 소재지가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·법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상융합, 메타버스, XR 융합콘텐츠 관련 기업
 - ※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, 소프트웨어 개발, 컴퓨터 프로그램, 정보통신, 콘텐츠, ICT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
- 주관기업이 지역 내·외 기업,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
 - ※ 컨소시엄의 경우 울산 소재 기업이 **주관기업**으로 참여해야 하며, 주관기업 참여율(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)이 50% 이상이어야 함
-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복수 지원 불가
- 동일 과제로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 불가

< 신청제외 대상 >
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-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- 나.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-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제한 등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처분 중인 경우
-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2

지원규모 및 내용

1) 울산 특화산업 연계 가상융합콘텐츠 개발 및 실증지원

○ 지원목적

- 생성형AI 등을 통한 가상융합콘텐츠 개발, 기술적·비용적 장벽완화 및 지역 산업 발전 수준과 보유 자원을 고려한 울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업현장 가상융합콘텐츠, 생성형AI, XR 융합콘텐츠 실증·상용화를 통한 가상융합 XR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
- 지역 제조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가상융합콘텐츠를 개발·공급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융합콘텐츠 전문기업의 동반성장
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120백만원 내외 1건

○ 지원대상 : 울산 소재 가상융합콘텐츠 관련 기업

※ 융합콘텐츠 현장적용 및 실증을 위한 수요기업 1개 이상 참여 必

※ 수요처 증빙서류(확약서 등)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

○ 지원분야 : 울산 특화산업 분야(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, 비철금속)

○ 지원내용

- 가상융합콘텐츠 개발, 울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수요기업 협업 및 생산/공정 시뮬레이션 가상융합콘텐츠 제작 및 실증지원, 생성형AI, 메타버스 XR융합기술을 활용한 생산/공정 시뮬레이션 개발 및 실증 사업비 지원

※ 특화산업분야 대표사례를 발굴하여 집중지원(실증개발지원)

○ 필수항목

- 융합콘텐츠 현장적용 및 도입을 위한 수요기업 1개 이상 참여 必

※ 수요처 증빙서류(참여 및 도입확약(인서)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

2) 실가상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

○ 지원목적

- 가상융합산업 콘텐츠 소재 발굴 및 국내·외 시장 수요를 반영한 생성형 AI, XR·메타버스·실가상 융합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상용화 가능한 콘텐츠 개발
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내외 1건

○ 지원대상 : 울산 소재 가상융합콘텐츠 관련 기업

○ 지원분야 : 자유(산업, 홍보, 관광, 직무 등) ※ 게임, 웹툰,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양

○ 지원내용

- 생성형 AI, XR·메타버스,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·외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실증형 콘텐츠를 발굴·제작하고, 실제 현장 또는 서비스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상용화 모델의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비용을 지원

3)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고도화 지원

○ 지원목적

- 기 제작된 가상융합기반 융합콘텐츠(자체제작 및 지원사업을 통한 제작)에 대한 기술 분야 고도화 및 콘텐츠 재창조를 통한 사업화
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40백만원 내외 2건

○ 지원대상 : 울산 소재 가상융합콘텐츠 관련 기업

○ 지원분야 : 자유(산업, 관광, 문화, 엔터 등)

○ 지원내용

- 기 제작된 메타버스 융합콘텐츠(자체 제작 및 지원사업 제작 포함)를 산업현장 및 수요처에 실제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기술 고도화 및 생성형 AI 기반 기능 확장, 상용화 검증 수행 등을 지원하여 실증 기반 사업화 전환 등 관련 제반 지원

※ 콘텐츠 고도화 완료 후 필요시 실증수요처에 적응하여 실증 평가 진행

3

지원조건

○ 민간부담금 별도 편성 필수

-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20% 이상(현금 비중 10% 이상)

※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% 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% 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% 이내	필요시 부담

※ [예시]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·현물 부담 산출 : 지원금액이 1.2억일 경우

- 총 사업비는 150,000,000원 (=120,000,000원/80%)
-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민간부담금은 30,000,000원 (=150,000,000*20%)이상
-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현금은 3,000,000원 (=30,000,000*10%)이상
-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현물은 (기업부담금 - 현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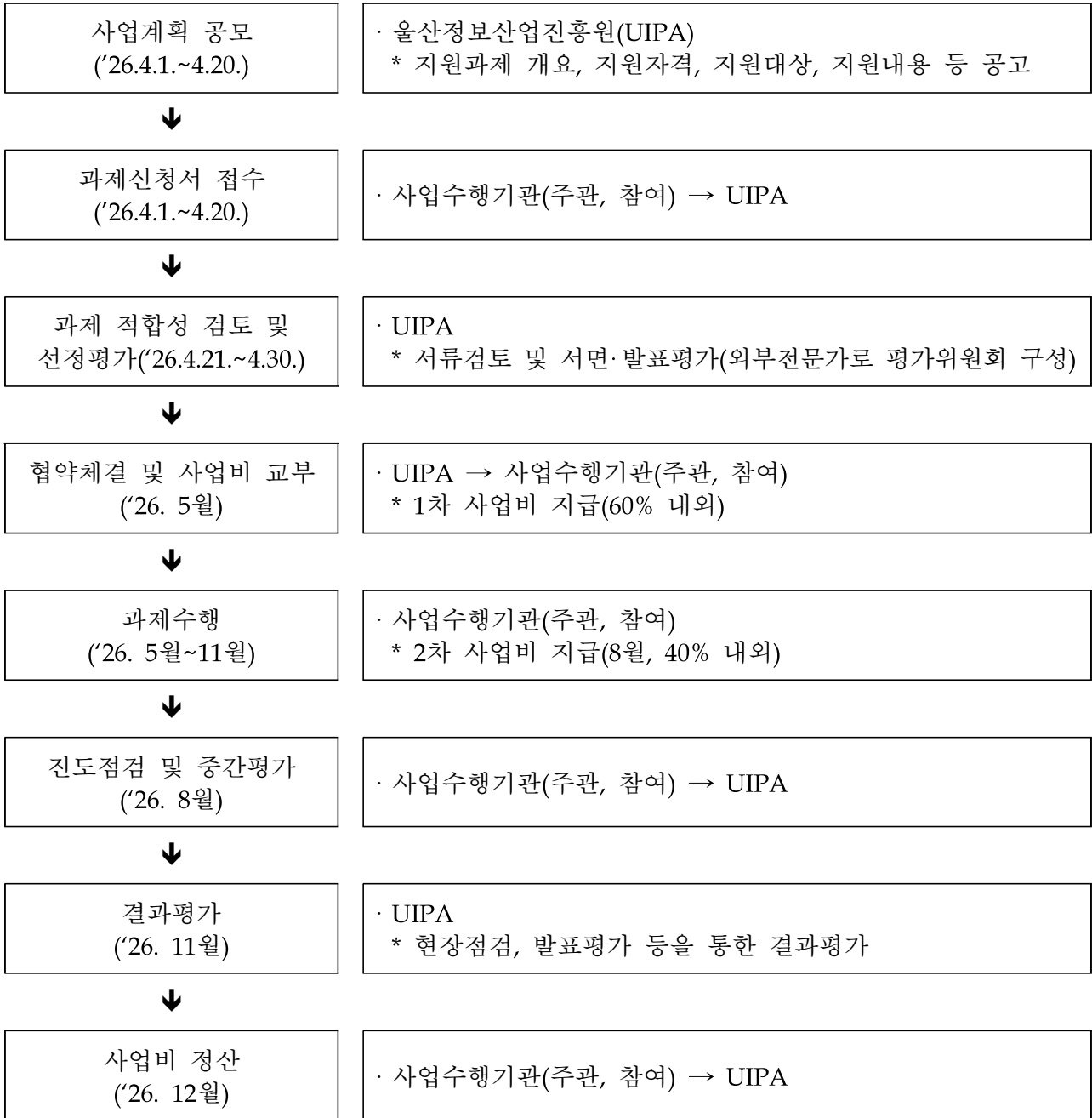
○ 사업기간 내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개발 완료 및 개발내용 최종 평가 시 시연 必

- ※ 개발 미완성,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, 기타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(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)

- (위탁·용역 계약 시)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식)
- 예산편성 시 사업비 정산위탁 수수료(운영비-일반수용비) 필수 편성
- 선정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 이상(지역 특화산업 연계 분야 2명 이상) 채용이 필수이며,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
-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,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
- 선정기업은 과제수행 시 관련 간담회,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의무참여, 과제종료 후 울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내 결과물 전시(1년)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

4

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I

사업 신청 및 관리

1

사업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6. 4. 1.(수) ~ 4. 20.(월) 18:00까지

※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요망

○ 신청방법 :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 방문 또는 우편제출

○ 접수처

- 이메일 접수

담당자	이메일 주소
장지현 전임	jjh601@uipa.or.kr

- 서류제출 : 울산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1층((44056) 울산시 동구 보성길 73)

○ 제출서류

구 분	비 고	
1-1. 과제신청서	* 작성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(파일명) 1. 사업수행계획서 * 50페이지 이내 작성	서식1
1-2. 사업수행계획서		서식2
1-3.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서		서식3
1-4. 수행기관 현황 자료		서식4
2. 사업계획 발표자료	* 15분 내외 발표 분량	-
3.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협약서		서식5
4. 참여의사 확인서		서식6
5. 실증·수요기관 도입 협약서	* 울산 특화산업 연계 분야만 작성	서식7
6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 자기점검표		서식8
7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* 참여인력 전원 제출	서식9
8.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		서식10
9. 청렴이행각서	*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	서식11
10.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서		서식12
11.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	*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	별첨
12. 사업자등록증		별첨
13. 법인등기부등본		별첨

14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*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 * 주관·참여 기관 모두 제출	별첨
15. 참여인력 재직증명서	* 참여인력 전원 제출	별첨
16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	*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	별첨
17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*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	별첨
18. 재무제표(최근 2년)	* 25년도 미발행 시 추정재무제표 제출	별첨

2 선정절차

- 적합성검토 및 서면·발표 평가(평가위원회)를 통해 최종 확정
- 적합성 검토
 -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 - 검토방법 :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 등 내부검토
 - 검토내용 : 신청과제의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
- 선정평가
 -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
 - 평가방법 :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(PT발표 및 질의응답)
 - ※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선정
 - ※ 평가위원회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,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등 외부 7인 이내로 구성
 - 평가내용 : 적합성 검토 통과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, 사업화 계획 등 정량 및 정성평가
 - 평가기준

구분	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정량 (20)	사업 추진 체계	사업추진 수행역량	- 정부과제 수행실적(최근 3년간, 동일과제 내용 제외)	10
			- 기업 매출규모(최근 3년간,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)	5
			-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(연구개발인력/종사자수)	5
정성 (80)	사업 타당성	추진의지	- 사업 총괄책임자의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 - 기술개발전략, 사업관리계획, 성과 등 추진전략 제시	5
		운영체계	-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전담인력의 확보 -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보	10

	사업계획	-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(추진체계, 역할분담, 수요기업구성 등) -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	10
	추진전략	- 실용화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- 실증을 통한 사업의 확장성 (산출물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)	20
	사업기술	- 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-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·독창성 (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등 제시)	20
	기대효과	- 사업화를 통한 신규시장 확대, 매출발생, 수출 등 가능성 -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	10
	사업비	- 자원조달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	5
합 계			100

- 정량평가 지표

구분	평가항목	배점			
		4건 이상 (10)	3건 이상 (7)	2건 이상 (5)	2건 미만 (3)
사업추진 수행역량	○ 정부과제 수행실적(최근 3년간, 동일과제 내용 제외) - 최근 3년간 수행한 정부과제(분야 : 메타버스, VRAR, XR 융합콘텐츠 등) - [서식13]을 통하여 수행내용 작성	4건 이상 (10)	3건 이상 (7)	2건 이상 (5)	2건 미만 (3)
	○ 기업 매출규모(최근 3년간,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) - 최근년도 재무제표는 부가세과제표준증명 등 매출확인 - 증빙 가능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산출하되,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자료 제출	5억 이상 (5)	1억 이상 (3)	1억 미만 (1)	
	○ 직전년도 연구개발인력 비율(연구개발인력/종사자수) 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연구개발 인력현황표 확인 (연구개발 인력현황표 :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서류, 미보유기업의 경우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 가능서류 대체 가능)	15% 이상 (5)	5% 이상 (3)	5% 미만 (1)	

- 가점항목

구분	평가내용	가점
인프라 활용 (공통)	- 울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인프라 활용 시 (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센터 입주기업일 경우)	2
실증 기반 (공통)	- 수요기업 1개 이상 (참여)도입확약서 제출 시 (울산 특화산업 분야의 경우 2개 이상일 경우)	2
기술 활용 (가상융합기반 콘텐츠 고도화 지원 분야만 해당)	- 생성형 AI 기술 적용 수준 및 과제 기여도 (생성형 AI가 핵심기능으로 적용되며, 모델 자체 개발 수준 또는 외부 모델 활용에 중심 기술로 활용 등)	1
합 계		5

○ 사업관리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-PIMS시스템(pms.kca.kr)을 통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
- **(협약체결)** 사업수행기관(참여기관 포함)은 선정결과 통보 후 전담기관(울산정보산업진흥원)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
- 협약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- *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/참여기관은 지원금 총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- ** 이행보증보험증권 : 보험기간(협약기간 + 60일), 보험금액(총 지원금 100%)
 - ***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, 협약체결 이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 조치
- **(협약변경)**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(울산정보산업진흥원)의 사업성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·요청할 수 있으며,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
- **(중간보고)** 사업 진행현황, 제반 수집정보 등 중간보고서 제출
- **(결과보고)** 사업결과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
- **(자료제출)** 전담기관(울산정보산업진흥원) 요청 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, 사업비 계좌 거래 내역서, 회계 검토보고서 등 자료 제출
- **(현장점검)** 전담기관(울산정보산업진흥원)은 사업 목표 및 사업내용 변경, 사업 부실 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시행
- **(성과관리)**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자료(매출 실적 증빙 자료 등) 제출을 사업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
- **(사업비 관리)** 사업 수행기관(참여기관 포함)은 사업비 전용 **신규계좌(통장)**를 개설하여 **별도의 계좌로 관리**하고, 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
- **(사업비 정산)** 사업 수행기관(주관기관)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정산되며, 위탁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

- (기타보고)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 완료 후 전담기관(울산정보산업진흥원) 요청 시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성실히 보고 및 협조

○ 사업보고 및 평가

- (중간평가)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,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, 향후 계획 등 수행현황에 대한 중간진도점검 실시
- (결과평가)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발표평가를 통하여 수행실적, 사업관리 등 종합적 평가
-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중단, 지원금 환수, 향후 진흥원 추진사업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사업수행기관 제재

- 사업비를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
- 사업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
- 사업수행기관(참여기관 포함)의 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

IV

관련규정 및 유의사항

1

관련규정

○ 과제 적용규정

구분	내용
사업비 구성 및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·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·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·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·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
평가 및 성과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·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
기타	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·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 관련 하위지침 등을 적용

2

유의사항

- 제출된 접수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규정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임
- 지원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선정 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**공개하지 않음**(선정 평가결과 신청기업 개별통보)
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사용,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상기 공고 내용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3

문의처

- 조선융합사업단 장지현 전임(jjh601@uipa.or.kr, 052-252-8527)